

고 시

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5-30호

「별정우체국법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경인지방우정청장

□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

○ 지정해지 내역

별정우체국	관할우체국	피지정인	별정우체국 위치	지정해지 사유
보개우체국	안성우체국	이강욱	경기도 안성시 삼거리길 17	피지정인의 지정해지 신청

○ 지정해지 일자 : 2025. 12. 31.